

의정부지방법원 2018. 11. 14 선고 2018가단1263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메이슨에프앤아이 대부 주식회사

피 고 A

변론 종결 2018. 10. 17

판결 선고 2018. 11. 14

주 문

1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1991. 4. 8. 접수 제385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관하여
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1. 4. 8. 접수 제38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쳤는데,위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
한다.

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채권(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16462호)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
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2. 적용법조: 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왕지훈

별지